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2. 2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3. 4.

다. 상정일자: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2.3.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2022.1.1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3) 회의 및 직원(안 제6조 ~ 제7조)
- 4)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8조)
- 5)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6) 위원 등 준수사항(안 제10조)

7)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1조)

8) 운영세칙(안 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이며, 그동안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되어온 구청장 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던 바, 사무인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구청장 당선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등 구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임기 동안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임.
- 동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관련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 존속기한의 종료와 더불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촉된다 할 것임.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이며 제3항에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 구성과 인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자문위원까지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원회 운영세칙에 적정 규모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임.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구 소속 공무원의 파견도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활동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위원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이를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임.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어긋남이 없고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